

심의결과 일안대로 가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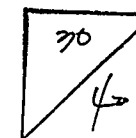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제 10 호	제 4 차	1993. 2. 4.	총 재 조 순

의안 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」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
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및 은행법 제30조의2

제의취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의 범위를 축소하고, 여신관리규정상의
업종분류 기준 및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 산정방법의 변경 등을
통하여, 여신관리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,
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

< 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법규조항

한국은행법 제7조

① (생 략)

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
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자사를 발할 수 있다.

④ ~ ⑥ (생 략)

은행법 제30조의2

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동일계열기업군 단위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동일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.

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」 주요 개정내용

1.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의 범위 축소(제5조 제1항)

- 대출금 기준 상위 50대 계열기업군 → 30대 계열기업군
- 배경
 - 31~50대 계열에 대한 현행 규제내용은 부동산관련 규제에 국한
 - 총자산, 매출액 및 대출금 점유비중이 10%내외 불과
 - 「공정거래법」상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도 30대 기업집단(종전 78개)으로 축소

2. 업종분류 기준 및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 산정방법 변경(제8조 제1항)

구 분	현 행	개 정 *
◦ 업종분류 기준	◦ 당행 "기업경영분석"상의 업종분류	◦ "한국표준산업분류"상의 중분류기준 분류
◦ 업종별 자기자본 지도비율 산정시의 표본 업체	◦ "기업경영분석"상의 모든 표본업체	◦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국내기업체

* 다만, 은행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종분류와 표본업체의 범위를 일부 조정 가능

3. 기타 개정사항

- 여신관리대상 계열 및 업체의 연간 자금수지계획 협의조항 삭제(제8조 제2항 제5호)
 - 대상계열 및 업체의 기업금융에 관한 과도한 제약 소지
 - 자금조달 및 운용수단의 다변화 및 가변성에 비추어 실효성 희박
- 금융통화운영위원회앞 보고제도의 개선(제9조의 2)
 - 대상기업군별 매분기 보고 → 주요사항의 수시보고
- 경과조치
 - 업종분류 및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 산정방법 변경내용의 시행일자는 「세칙」에 위임
 -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에 대하여도 5·8대책관련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관련 조항은 계속 적용

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」 개정내용

현행	개정 (안)	비고
제 1 조 ~ 제 4 조 (생략)	제 1 조 ~ 제 4 조 (현행과 같음)	
제 5 조 (대상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제한) ①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대출금기준 상위 50대 계열기업군(이하 "대상기업군"이라 한다) 및 그 소속기업체(이하 "대상기업체"라 한다)에 대하여는 여신취급을 가급적 억제하고 이의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.	제 5 조 (대상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제한) ① 금융기관은 금융기관 대출금기준 상위 30대 계열기업군(이하 "대상기업군"이라 한다) 및 그 소속기업체(이하 "대상기업체"라 한다)에 대하여는 여신취급을 가급적 억제하고 이의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.	31~50대 계열은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
②~③ (생략)	②~③ (현행과 같음)	
제 6 조 ~ 제 7 조 (생략)	제 6 조 ~ 제 7 조 (현행과 같음)	
제 8 조 (기업재무구조 개선) ① 은행감독원장은 한국은행 "기업경영분석"의 업종분류에 따라 최근 3년간 "업종별 자기자본비율"의 대표치와 전산업 평균치를 감안하여 "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"을 매년 설정하여 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.	제 8 조 (기업재무구조 개선) ① 은행감독원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중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하고, 대상기업체를 표본업체로 하여 매년 "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"을 설정한다. 다만, 은행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종분류 및 표본업체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	업종분류 기준 및 업종별 자기자본지도비율 산정 방법 변경
② 주거래은행은 대상기업군 및 대상기업체의 전반적인 차입금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상기업군 및 대상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함으로써 이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.	② 주거래은행은 대상기업군 및 대상기업체의 전반적인 차입금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상기업군 및 대상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함으로써 이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.	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
5. 연간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자금수지계획의 협의	(삭제)	계열별·업체별 연간자금수지계획 협의제도는 기업금융에 대한 과다 계약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
6. ~ 8. (생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	호 체상

현행	개정 (안)	비고
③~⑤ (생략)	③~⑤ (현행과 같음)	
제9조 (생략)	제9조 (현행과 같음)	
제9조의2 (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) 은행감독원장은 제3장의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내용을 대상기업군별로 매분기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	제9조의2 (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한 보고) 은행감독원장은 제3장의 계열기업군에 대한 <u>여신관리와 관련한 주요사항을</u>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	○ 분기별 정기보고 대신 주요사항의 수시보고로 변경
제10조 ~ 제12조 (생략)	제10조 ~ 제12조 (현행과 같음)	
	부칙	
	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3. 2. 8. 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 제1항 규정의 시행일은 동 규정개정에 따른 「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」 개정규정의 시행일로 한다.	
	② (경과조치) 정부의 「5.8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」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중 이 규정에 따라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거나, 주식분산우량기업체로 선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시까지 증전규정을 계속 적용한다.	○ 5.8대책관련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기업체중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체 등에 대한 사후관리